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47
----------	----

제안년월일 : 2000. 11. 18
제안자 : 이상 은의원의외 6인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사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과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제88회 사하구의회 정례회에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 7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하구청장이 제출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예산 운용을 유도하고 정확한 재정수요 및 수입예측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지원 배분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코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함.

3. 주요내용

- 가. 구성위원정수 : 7명
- 나. 위원선임 : 각 상임위원회별 배정위원을 추천 받아 본회의 의결로 선임
- 다. 상임위원회별 위원배정 : 총무사회위원회 3명, 도시산업위원회 4명
- 라. 활동기간 : 2000. 11. 25일부터 12. 22일까지(28일간)

4.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 나.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